



다단계판매란 무엇이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와 소비자가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다단계 판매는 네트워크 마케팅, MLM(Multi Level Marketing), 피라미드 판매 등으로 불리워지고 있으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상 용어는 '다단계판매'이다.

다단계 회사는 다단계 조직(3단계 이상)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회사이며, 다단계 판매원은 다단계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판매원 자신이 소비를 위해 상품을 구매하거나 구매한 상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사업자」이다.

일반적인 판매는 제조업자·도매업자·소개업자·소비자로 이루어지나 다단계판매는 판매업자(회사)·다단계 판매원·소비자에게로 상품의 유통이 이루어진다.

다단계 판매회사는 시, 도에 등록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제품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주로 건강식품, 건강보조기구, 생활용품, 화장품, 전화기와 전화요금 선불카드 등을 취급하고 있다.

2 다단계 판매회사의 판매원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이나 친척과 이웃 사람들에게 이를 권유하여 가입하게 한다.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내용은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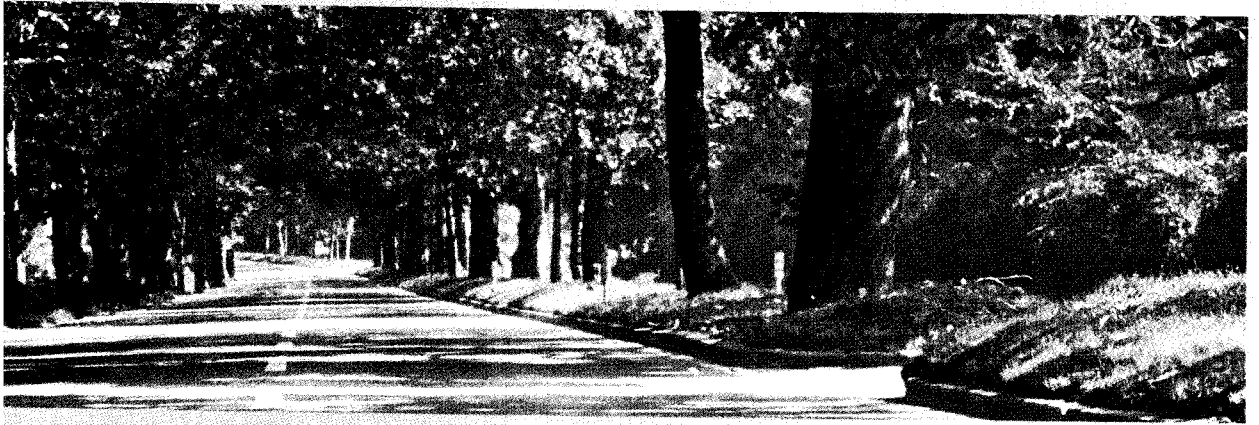
기대감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사업투자라는 명분으로 필요하지도 않은 물품을 다량 구매하는 경우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등록 다단계 판매회사에 사업자금을 투자하거나 구좌가입 형태로 금전을 납입하는 소위 유사금융으로 인한 피해형태로 많이 발생한다.

다단계 판매에 대하여 상담하는 내용은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해도 되는지와 어떤 특정 다단계 회사가 믿을만한 회사인지와 물품을 구입한 후에 반품을 했는데도 환불을 거절당한 경우와 무등록 다단계회사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 등 소비자의 피해유형은 다양하다.

건전한 다단계 회사인 경우에는 상품을 사용해 본 판매원이나 소비자가 제품을 꾸준히 재구매하기 때문에 반품도 없다. 그러나 가입할 때 수백만원의 물품을 거의 강제로 구입하게 하는 피라미드식 영업을 하는 다단계업체는 반품이 어렵고 그만두고 싶어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가입시에는 반드시 상품이나 영업방법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고 꼼꼼하게 알아 보아야 한다.

피라미드 판매는 사행심을 조장하여 주로 질이 낮은 상품을 비싼 값으로 판매하거나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구좌를 돌게 하거나 보통 수백만원의 물품을 구매하게 하여 이 구매자체에서 수입이 생기게 하는 사람 장사의 성격이 강한 판매방식을 말한다. 일반적인 피라미드 조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입 초에 사업투자나 승급이라는 명목으로 구좌(보통 1구좌당 1~2백만원)를 돌게 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물품



을 다량으로 구입하게 하며, 기본적으로 상품의 유통이 아니고 사람모집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모집한 하위 판매원의 무리한 구매로 일시적으로는 이익을 볼 수 있으나, 이는 하위판매원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람만 데리고 오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3

다단계 판매의 피해 내용으로는 취업알선과 사업소개를 미끼로 대학생을 유혹하는 다단계 회사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 사업투자나 승급을 이유로 불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을 수백만원 어치를 구매하도록 강요한다. 이들 회사는 반품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포장을 훼손하거나 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나중에 반품하고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을 개봉하지 말고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최종 소비자로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20일이 지나면 반품을 요구하기가 어려워지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 본인의 계약내용과 환불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다음에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처음 소비자가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약 통지를 해야 하고 판매원은 기간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남은 물건의 반품이 가능하나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3~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10%, 6개월~1년이 지난 경우에는 30%이고 1년이 지난 경우에는 50%의 비용이 공제된다.

금융 피라미드는 빠른 속도로 신종수법이 나오고 있고 규제할 법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허가받지 않은 수신행위(자금모집)자체가 불법이며 유사 수신업체에 의해 돈을 잃는 경우에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려우므로 등록이 되어 있는 허가받은 회사인지와 물건의 거래가 없거나 물건 거래를 빙자하여 금전거래만 하는지의 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불법 다단계판매는 다단계 판매업 등록증이나 등록번호가 명확하지 않거나 후원 수량비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후원수당 산정이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가입비나 사용상품이라는 명목으로 판매원 가입시 돈을 받거나 물건을 사게 하는 경우, 사람을 가입시키는 행위만으로 수입이 발생되거나 사업장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고의로 자주 변경되는 경우와 상품이 게재되어 있지 않은 금전배당 조직으로 다단계 판매와 유사하게 순서대로 단계별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는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임을 알고 조심해야 한다.

짧은 시간 동안에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럴 듯한 사업이라고 믿고 가입하여 금전상의 손해는 물론이고 귀중한 인간 관계에 금이 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선택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겠다. **www.kca.go.kr**

문의전화: 720-9898, 720-0328